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5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9. 30.

제출자 : 달성군주



1. 개정이유

- 달성남부도서관 명칭 변경 결과에 따라 달성어린이숲도서관으로 도서관명을 변경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달성남부도서관 명칭 변경(별표 1)

- (당초) 달성남부도서관
- (변경) 달성어린이숲도서관

나. 달성군립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추가(안 제24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서관법 제29조, 제33조~제34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4. 8. 22. ~ 9. 13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달성군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군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(제2조 관련)

명 칭	위 치	비 고
달성군립도서관	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10-13(죽곡리)	지역중앙관
달성어린이숲 도서관	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(중리)	거점도서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
<p>제2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<u>기타</u>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</p> <p>[별표1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립 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달성남부</u> <u>도서관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비 고	달성군립 도서관	(생략)		<u>달성남부</u> <u>도서관</u>	(생략)		<p>제24조(기능)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달성군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<u>8. 그 밖에</u>-----</p> <p>[별표 1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성군립 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역</u> <u>중앙관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달성</u> <u>어린이숲</u> <u>도서관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거점</u> <u>도서관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위 치	비 고	달성군립 도서관	(현행과 같음)	<u>지역</u> <u>중앙관</u>	<u>달성</u> <u>어린이숲</u> <u>도서관</u>	(현행과 같음)	<u>거점</u> <u>도서관</u>
명 칭	위 치	비 고																	
달성군립 도서관	(생략)																		
<u>달성남부</u> <u>도서관</u>	(생략)																		
명 칭	위 치	비 고																	
달성군립 도서관	(현행과 같음)	<u>지역</u> <u>중앙관</u>																	
<u>달성</u> <u>어린이숲</u> <u>도서관</u>	(현행과 같음)	<u>거점</u> <u>도서관</u>																	

관 계 법 령

□ 도서관법

제29조(공공도서관의 설치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·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·군·구(자치구인 구를 말한다)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·공립 공공도서관은 “도서관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.

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제33조(국·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·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·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.

제34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)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